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16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아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4. 20.

##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아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019. 11. 21.(목), 11. 22.(금)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인 ♀♀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26.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관련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후, 2019. 12. 9. 청구인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에 따른 조치내용 없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20. 3.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1. 절차적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는 다음 날부터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업무지시로 인하여 청구인은 피해교원으로서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이 마치 청구인이 전적으로 잘못된 사안인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또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요청내용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에게 교무실에서 핸드폰 사용 규정에 대하여 지도하던 중, ♀♀이 일방적으로 교무실을 나갔고,

청구인은 핸드폰 지연 제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을 따라가 복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던 중, ♡♡이 흥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바로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이것은 청구인을 위협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위이며, 이점은 ♡♡이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의 학교 면담에서 인정한 바 있고, 따라서 ♡♡의 이 사건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25장에 규정된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만큼, ♡♡의 행위는 교육활동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위원회 회의 개최는 이 사건 학교 교무부장이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 의사를 물어보았고, 병가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할 것을 안내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사건 학교 교감은 청구인과 학생을 번갈아 가며 상담을 하였고, 사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 개최 및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던 만큼 절차적 하자는 없다.
- 나. 유리창 파손을 한 당사자가 ♡♡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 입장이 너무 상이하여 고의성 진위판단이 어렵고, 이럴 경우는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의하였던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9반 담임교사이고, ♀♀은 □□고등학교 2-9반 학생이다.
- 나. ♀♀은 2019. 11. 21. 미술수업 때 핸드폰을 미제출하였다가 미술수업이 끝나고 미술선생님께 핸드폰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 11. 21. 4교시 체육수업 전에 교실로 와서 ♀♀에게 핸드폰 미제출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았고, ♀♀은 청구인과 대화를 하다가 흥분하여 주먹을 휘둘러 복도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 라.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 12. 4. 개최되었고, 청구인은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는 다음 날부터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업무지시로 인하여 청구인은 피해교원으로서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이 마치 청구인이

전적으로 잘못된 사안인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또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요청 내용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이 사건 며칠 후에 바로 청구인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의사를 물어보았고, 병가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서 교권침해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과의 상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 11. 27. 문자 메시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날짜와 장소를 통지받았고, 청구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냈으며, 2019. 12. 2.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번의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고의적으로 지체되어 개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교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의 주된 심의사항이 ♀♀이 고의로 유리창을 깨 것인지 여부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내용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청구인은 ♀♀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이 청구인에게 고의로 주먹을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려 폭행의 죄를 범하였는지가 쟁점인 바,

♀♀은 비록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부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손을 뿌리치다가 유리창에 손이 맞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은 이 사건 □□고등학교 교감과 2019. 11. 25. 1차 면담의 내용을 보면 ‘담임선생님과는 주먹을 쥐고 휘두른 점, 그 과정에서 유리창 파손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9. 11. 26. 3차 면담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과의 대화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유리창을 파손한 것’ 으로 진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친구의 손을 뿌리치다가 유리창에 손이 맞아 유리창이 깨어졌다면 그와 같은 진술이 두 번에 걸친 면담조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주먹을 쥐고 휘둘렀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 점,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출석하기 전의 이 사건에 대한 사안 설명에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이성을 잃고 분노심에 주먹을 들어 복도 출입문 옆 첫 창문을 파손함’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도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에는 ♡♡이 친구의 손을 뿌리치다가 유리창에 손이 맞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 주먹을 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 주먹에 대한 상처의 형태와 상처의 분포도 및 ♡♡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45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친구의 손을 뿌리치다가 유리창이 깨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면담 조사보고서에 진술한 것과 같이 청구인에게 주먹을 쥐고 휘둘러서 유리창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과 △△△의 카톡 진술이 있으나, ♣♣♣과 △△△의 진술은 ♡♡의 면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은 청구인과의 처음 카톡대화에서 ♡♡이 유리창으로 주먹을 날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학생의 진술서에는 ‘신아가 주먹으로 쳐서 깬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B학생의 진술서에는 ‘복도 측에서 교실 측으로 주먹으로 쳐 창문을 깨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과 △△△의 카톡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19. 11. 26. 청구인 및 ♡♡과 목격학생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고, 모두가 ♡♡이 돌아서면서 유리창을 깬 것으로 일치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여 2019. 11. 26. 재연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작성한 3차 면담에는 ‘상황재연’ ‘선생님과의 대화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일치함’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위 회의록에 기재한 것처럼 ♀♂이 돌아서면서 유리창을 깨 것으로 일치한다고 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만약 2019. 11. 26. 상황재연에서 ♀♂이 돌아서면서 유리창을 깨 것으로 청구인, 목격자, ♀♂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였다고 하면, 피청구인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교권보호위원들에게 사안설명을 할 때 교육침해활동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요한 이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당연 함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었고, ♀♂의 부모 님의 진술 이후 거론이 된 점을 볼 때 ♀♂의 진술과 같이 돌아서 면서 유리창을 깨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019. 11. 26. 당시 모두가 ♀♂이 돌아서면서 유리창을 깨 것으로 일치하는 재연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는 바, 이 사건 ♀♂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비록 청구인의 신체를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어진 것인 만큼, 청구인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 「형법」 제2편제25장(폭행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이 청구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폭행의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